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
----------	-----

제출일자 : 2005.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군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등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 부동산(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위원회가 필요함에 따라 토지 및 주택가격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주민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재산권 보호를 기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관련법률 변경

- 위원회 명칭변경(안 제1조)
 -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 ⇒ 대구광역시달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 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4조 제4내지8호)
 -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간사를 이원화(안 제7조제2항)
 - 토지평가업무담당6급 ⇒ 토지평가 및 주택가격 업무담당6급

4. 참고사항

-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51조
- 입법예고 : 2005. 2. 18 ~ 3. 6(20일간)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로, “대구광역시달성군 토지평가 위원회”를 “대구광역시달성군 부동산평가 위원회”로 한다.

제4조에 제4호내지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중 “토지평가업무담당6급”을 “토지평가 및 주택가격업무 담당6급”으로 한다.

제11조중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군토지평가위원회는 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u>를 시행령 제14조 <u>제3항</u>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u>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기능) (생략) 1.~3. (생략) 4.~8. <신설></p>	<p><u>대구광역시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u>동법시행령</u> 제51조 <u>대구역시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u>-----</p> <p>-----.</p> <p>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u> 5. <u>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6. <u>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u> 7. <u>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8. <u>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u></p>
<p>제7조(간사와 서기)①(생 략) ② 간사는 <u>토지평가업무 담당 6급</u>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7조(간사와 서기)①(현행과 같음) ② --- <u>토지평가 및 주택가격업무 담당 6급</u> -----.</p>